

#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병도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888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2019년 8월 7일

발 의 자 : 이병도, 이승미, 송아량, 우형찬,  
이영실, 송재혁, 김동식, 김용연,  
유 용, 김태수, 김제리, 오한아,  
송도호, 김태호 의원 (14명)

## 1. 제안이유

- 금년은 3·1운동 100주년,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로서, 오늘날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독립유공자 등 국가유공자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음.
- 현행 조례는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80%, 5·18 민주유공자와 경차 등의 이용자 등에 대해서는 50%, 전통시장 이용자와 다동이 행복카드 소지자 등에 30%의 주차요금 감면조항을 두고 있지만, 상이자 또는 고엽제환자, 부상자인 국가유공자에게만 적용하고 있어, 비장애인 국가유공자 특히 이동이 불편한 고령의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없는 상태임.
- 서울특별시 차원에서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여 이들의 명예를 선양하고, 나라사랑 정신과 보훈의식을 고취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,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,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등에 규정된 상이자 또는 고엽제환자, 부상자인 국가유공자뿐 만 아니라,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(선순위자 1인)에게 주차장 이용요금의 80%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.(안 제7조제1항제1호마목 신설)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,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,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,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, 「주차장법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제1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마.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독립유공자(유족)증을 제시한 사람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7조제1항제1호마목의 적용에 있어 이 조례 시행 당시 민간위탁계약기간 중인 주차장(제6조의 공영주차장 중 제10조에 따라 민간위탁관리중인 주차장을 말함)은 그 위탁계약기간이 최초 만료되는 시점부터 적용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7조(주차요금의 감면 등) ① 시 장은 제6조제1항 본문에 불구하 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 는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.</p> <p>1. 다음의 장애인 및 국가유공 자 등이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한다.다만, 지하철환 승주차장의 경우에는 1일 1회 당 최초 3시간까지의 주차요 금은 면제하고 이후 주차요금 의 100 분의 80을 할인한다.</p> <p>가. ~ 라. (생 략)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2. ~ 12. (생 략)</p> <p>② · ③ (생 략)</p>	<p>제7조(주차요금의 감면 등) ① 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----- -----.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가. ~ 라. (현행과 같음)</p> <p>마. 「<u>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</u>」에 따른 독립유공자 <u>또는 그 유족으로서 독립 유공자(유족)증을 제시한 사람</u></p> <p>2. ~ 12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· ③ (현행과 같음)</p>

#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 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조(주차요금의 감면 등) 마호 신설로 서울특별시 재정수입의 순감소액 발생

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

## 3. 미첨부 사유

가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·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(제3조제1항제2호)

### 나. 추계결과

- 2018년 12월 기준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및 유족자 현황은 순국선열 본인 0명, 유족 198명, 애국지사 본인 11명, 유족 1,734명 도합 총 1,943명으로 이 자료에 의하면 독립유공자 본인보다 유족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다수이며 이들이 향후에 서울시 관할 주차장(직영/민간)을 얼마의 시간동안 몇 명의 유족자 또는 독립유공자 본인이 이용할지 예측하기 어려워 기술적 추계 어려움

## 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

담 당 관 남승우

정책조사팀장 여차민

분석관(주무관) 이수연

☎ 02-2180-7945

e-mail : sooyeon7@seoul.go.kr